#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50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9.

발 의 자:김정호ㆍ이수진ㆍ최기상

박희승 • 전진숙 • 이연희

윤후덕 • 정성호 • 임미애

허종식 · 이훈기 의원

(119]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있음.

그런데 '행위태양'이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한자어로, 법제처는 '알기 쉬운법령 정비기준'에서 '태양'을 '모습이나 형태' 등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.

이에 '행위태양'을 '행위의 내용·방식·형태 등'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0조의4).

법률 제 호

##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의4의 제목 중 "행위태양"을 "행위의 내용·방식·형태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"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"을 "유용행위의 구체적 내용·방식·형태 등을"로, "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"을 "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·방식·형태 등을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"행위태양"을 "행위의 내용·방식·형태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"행위태양"을 "내용·방식·형태 등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"행위태양"을 "행위의 내용·방식·형태 등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"행위태양"을 "해위의 내용·방식·형태 등"의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"을 "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·방식·형태 등을"로, "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"을 "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"을 "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"을 "유용행위의 구체적 대용·방식·형태 등을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40조의4(구체적 <u>행위태양</u> 제시 제40조의4(구체적 행위의 내용・ 방식・형태 등 제시 의무) ① 의무) ① 제25조제2항을 위반 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위탁기업 유용행위의 구체적 내용・방식 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• 형태 등을---------<u>자기의 구체적</u> 행위의 내 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위탁기 업이 이를 밝힐 수 없는 상당 용ㆍ방식ㆍ형태 등을-----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. --. ② 법원은 위탁기업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구체적 행 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상당 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----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 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 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 다. 다만,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 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

니하다.

-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40조의5제2항, 제3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. 이경우 제40조의5제3항 전단 중 "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필요한 때"는 "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<u>행위태양</u>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"로 본다.
-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 <u>행위태양</u>의 제 시명령을 할 수 있다. 이에 대 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- ⑤ 법원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<u>자기의 구체적 행위</u> 태양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<u>유용행위의 구체적</u>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③
<u>내용</u> ·방식·
형태 등
4
<u>행위의 내용·</u>
<u>방식·형태 등</u>
⑤
자기의 구체적 행위
의 내용·방식·형태 등을
<u>Ĥ</u>
용행위의 구체적 내용・방식・
형태 등을